등록번호	대중교통과-3375
등록일자	2019. 06. 24
결재일자	2019. 06. 24
공개구분	비공개(5)

행정사무관	대중교통과 과장	★종합교통정책관
장기영	김동준	2019. 6. 24. 김상도
협조자	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명준	

「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구축 · 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 개정 추진	주요 검토사항	
	정 책 중 요 도	낮음
	민원 · 갈등 가능성	낮음
	기관간 이견가능성	없음
	홍보대책 필요성 (홈페이지 등록 필요성)	낮음
	서민생활 관련성	낮음

부적격 운수종사자의 승무를 방지하고 현행 규정에서 인용한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을 현행화하기 위해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.

교 통 물 류 실
대 중 교 통 과

「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구축 · 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 개정 추진

1. 추진 배경

□ 현재 운수종사자 신규 채용 전 **채용예정자**의**자격여부를 확인**하고있으나,**확인에 대한 근거 규정**이**없어 규정화 추진**

* 운수종사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근거 규정 마련 필요

2. 주요 개정 내용

□ 운송사업자에게 신규 채용 뿐만 아니라 **채용 예정인 운수종사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**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(안 제18조제1항)

□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구축 · 운영에 대한 **인용규정 현행화***(안 제2조제1호 · 제2호 · 제5호, 안 제4조제1항, 안 제11조제1항)

* 당초 제44조의5(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구축 · 운영) → 현행 제46조

□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운수종사자 자료 수집을 위한 각종 **서식 관련 인용규정 현행화**(안 제12조)

* 운수종사자 신규채용 · 퇴직 현황 통보서,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현황 통보서, 택시운전자격증 발급현황 통보서, 운수종사자 교육결과 통보서

3. 향후 일정

□ 입안(방침결정) : ‘19. 6월

□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: ‘19. 6월

□ 규제심사 및 지침 고시 : ‘19. 7월